

제382회국회  
(정기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0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0년11월26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 · 김정재 · 강민국 · 정운천 · 송언석 · 김형동 · 강대식 · 김석기 · 이종배 · 이주환 · 金炳旭 의원 발의) ..... 11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최종윤 · 정청래 · 조정식 · 김민기 · 안규백 · 김경만 · 권철승 · 박성준 · 이규민 · 허영 · 홍기원 · 김주영 · 김교홍 · 신동근 의원 발의) ..... 11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 · 서동용 · 권철승 · 이장섭 · 윤재갑 · 이원택 · 전재수 · 최혜영 · 인재근 · 이동주 · 맹성규 · 김성주 · 박영순 · 윤관석 · 서영석 · 조오섭 · 송옥주 · 황운하 · 임호선 · 신정훈 · 윤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3) ..... 11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 · 고영인 · 양이원영 · 강선우 · 홍익표 · 허영 · 주철현 · 조오섭 · 최혜영 · 박성준 · 한정애 · 신정훈 · 박홍근 · 김성주 · 김경만 · 위성곤 · 강훈식 · 김철민 · 맹성규 · 한준호 · 양정숙 의원 발의) ..... 11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 · 강선우 · 홍정민 · 고영인 · 박성준 · 김경만 · 윤미향 · 이수진(비) · 김용민 · 서영석 · 김성주 · 오영환 · 임호선 · 김남국 · 최종윤 · 이은주 · 이용우 · 이재정 · 박영순 · 김상희 의원 발의) ..... 11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 · 고용진 · 김병욱 · 김정호 · 이형석 · 허종식 · 김성주 · 홍정민 · 오영환 · 박정 · 서영석 · 양경숙 의원 발의) ..... 11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 · 이성만 · 김성주 · 정일영 · 송영길 · 김교홍 · 유동수 · 박찬대 · 정운천 · 신현영 · 한정애 · 서영석 · 홍영표 · 인재근 · 배준영 · 신동근 · 박용진 · 최혜영 · 윤상현 · 맹성규 의원 발의) ..... 11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 · 최혜영 · 문진석 · 김성주 · 강선우 · 고영인 · 허종식 · 김원이 · 김경협 · 인재근 · 신현영 · 권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1) ..... 11
-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 · 인재근 · 권은희 · 김승수 · 한무경 · 김상훈 · 윤두현 · 이태규 · 윤희숙 · 권영세 · 김석기 · 金炳旭 의원 발의) ..... 11
-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홍성국 · 이원욱 · 조운천 · 허영 · 강병원 · 최연숙 · 기동민 · 이상현 · 임호선 · 강선우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 ..... 11
-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안민석 · 기동민 · 김윤덕 · 김경협 · 한병도 · 황희 · 이개호 · 강선우 · 진성준 · 이광재 · 인재근 · 조승래 의원 발의) ... 11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이용빈·김민기·김성주·고영인·권철승·유동수·박정·김정호·김윤덕 의원 발의) ..... 11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권명호·이명수·김도읍·추경호·한무경·윤영석·조경태·김희곤·金炳旭 의원 발의) ..... 11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김진표·김승원·이용우·권철승·이규민·강득구·김영호·강민정·강준현·홍정민·홍성국·오영환·전혜숙·인재근·이형석·서영석·최혜영·이상직·김민철·황운하·이수진(비)·정정순·김주영·김남국·김철민·임종성·유정주·김회재·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311) ..... 11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이상헌·홍성국·조승래·강선우·이용빈·신영대·서동용·임호선·최종윤·윤준병·이탄희·허종식·정춘숙·이학영·송재호·이형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315) ..... 11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김상훈·김형동·서일준·추경호·김용관·전주혜·홍준표·김예지·윤두현·유상범·구자근·김승수·이영 의원 발의) ..... 11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강선우·박성준·송재호·우원식·윤재갑·이상직·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전혜숙·허종식 의원 발의) ... 12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허종식·소병훈·인재근·강선우·이해식·김승원·문진석·박홍근·이정문·김경만·박상혁·조승래·설훈·홍성국·윤준병·윤영덕·오영환·윤재갑·조정식·이원욱·정춘숙·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22) ..... 12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신동근·김철민·안민석·기동민·박홍근·도종환·조승래·서영교·변재일·서영석 의원 발의) ..... 12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박용진·송옥주·유동수·임종성·송갑석·김철민·서삼석·기동민·박찬대 의원 발의) ..... 12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정호·허영·김수홍·한병도·김경협·정춘숙·박용진 의원 발의) ..... 12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인재근·오영환·송재호·이수진(비)·김영호·황운하·강준현·권철승·기동민·김승원·김회재·김남국 의원 발의) ..... 12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이종성·김희국·최형두·조명희·박성중·구자근·김희곤·윤영석·전봉민 의원 발의) ..... 12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신동근·김철민·안민석·기동민·박홍근·도종환·조승래·서영교·변재일·서영석 의원 발의) ..... 12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성일중·박덕흠·김영식·권성동·이종배·김용관·김예지·김성원·유경준·유의동·서정숙 의원 발의) ..... 12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권인숙·최혜영·조오섭·이용빈·이탄희·박정·이낙연·강준현·인재근·강득구·서영교 의원 발의) ..... 12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남인순·강선우·최혜영·정춘숙·이탄희·고영인·황운하·김승원·김경만·김홍걸·권철승·민홍철 의원 발의) ..... 12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박덕흠·서병수·정희용·김은혜·金炳旭·윤재욱·최춘식·윤두현·김용관·홍석준·구자근·김예지 의원 발의) ..... 12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기동민·김상희·김회재·맹성규·서

영석 · 송재호 · 양경숙 · 오영환 · 이성만 · 이수진(비) · 이용빈 · 인재근 · 조승래 · 최종윤 · 최혜영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성국 의원 발의)	12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 · 김교홍 · 김정호 · 어기구 · 유동수 · 정일영 · 이성만 · 윤관석 · 박찬대 · 이해식 · 이규민 · 홍기원 · 황운하 · 배진교 · 오기형 · 송영길 · 양기대 · 이용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1)	12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 · 김교홍 · 김정호 · 어기구 · 유동수 · 정일영 · 이성만 · 윤관석 · 박찬대 · 이해식 · 이규민 · 홍기원 · 황운하 · 배진교 · 오기형 · 송영길 · 양기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2)	12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3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최혜영 · 김진표 · 임오경 · 이용빈 · 인재근 · 박홍근 · 윤준병 · 허종식 · 한준호 · 장경태 의원 발의)	12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이영 · 박성중 · 김석기 · 김용판 · 임이자 · 박대출 · 강기윤 · 이종배 · 김승수 의원 발의)	12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홍성국 · 이수진 · 남인순 · 서영석 · 김영호 · 정청래 · 윤미향 · 맹성규 · 송갑석 · 오영환 · 전용기 · 김정만 · 김남국 · 안규백 · 고영인 의원 발의)	12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최혜영 · 김진표 · 임오경 · 이용빈 · 인재근 · 박홍근 · 윤준병 · 허종식 · 한준호 · 장경태 의원 발의)	13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박성준 · 황운하 · 홍성국 · 박영순 · 강득구 · 이성만 · 맹성규 · 전해숙 · 김승원 · 강선우 의원 발의)	13
4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4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 · 허종식 · 송재호 · 고영인 · 김상희 · 신동근 · 오영환 · 이용빈 · 김남국 · 인재근 의원 발의)	13
4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김민기 · 강훈식 · 남인순 · 박재호 · 이용빈 · 김한정 · 윤미향 · 김성주 · 서영석 의원 발의)	13
4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 · 서동용 · 권칠승 · 이장섭 · 윤재갑 · 이원택 · 전재수 · 최혜영 · 인재근 · 이동주 · 맹성규 · 박영순 · 윤관석 · 서영석 · 조오섭 · 송옥주 · 황운하 · 이수진(비) · 윤미향 · 양정숙 · 민홍철 · 권인숙 · 이규민 · 홍성국 · 이용우 · 임호선 · 문진석 의원 발의)	13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김진표 · 박홍근 · 윤준병 · 이용빈 · 인재근 · 임오경 · 장경태 · 최혜영 · 한준호 · 허종식 의원 발의)	13
4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 · 신동근 · 김철민 · 안민석 · 박홍근 · 도종환 · 기동민 · 서영교 · 변재일 · 서영석 의원 발의)	13
4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홍성국 · 강선우 · 허종식 · 김원이 · 임호선 · 고영인 · 이탄희 · 서영석 · 권칠승 의원 발의)	13
5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송재호 · 조승래 · 최혜영 · 김진표 · 남인순 · 인재근 · 이용빈 · 임종성 · 허종식 · 정춘숙 · 양정숙 · 강선우 의원 발의)	13
52.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 · 서동용 · 권칠승 · 이장섭 · 윤재갑 · 전재수 · 최혜영 · 인재근 · 이동주 · 맹성규 · 김성주 · 윤관석 · 서영석 · 조오섭 · 송옥주 · 황운하 · 민홍철 · 권인숙 · 이규민 · 홍성국 · 이용우 · 임호선 · 문진석 의원 발의)	13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김예지 · 이종배 · 권명호 · 김용판 · 정경	

- 회 · 김석기 · 임이자 · 최승재 · 배현진 · 김미애 · 정점식 · 전봉민 · 강기윤 · 윤창현 의원 발의) … 13
-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양이원영 · 권철승 · 윤재갑 · 박영순 · 이원택 · 인재근 · 김영배 · 박성준 · 김영호 · 강선우 · 윤미향 의원 발의) … 13
- 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박용진 · 송옥주 ·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 박찬대 의원 발의) … 13
- 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전해숙 · 허영 · 이용우 · 홍성국 · 황운하 · 이수진(비) · 김경만 · 윤미향 · 오영환 의원 발의) … 13
- 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김영진 · 송갑석 · 최혜영 · 서영석 · 홍성국 · 최종윤 · 송옥주 · 문진석 · 이탄희 · 소병훈 · 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0) … 13
- 5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정정순 · 문진석 · 김정호 · 민형배 · 이용우 · 이규민 · 이해식 · 임호선 · 윤재갑 · 송옥주 · 기동민 의원 발의) … 13
- 5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 · 윤관석 · 송영길 · 이성만 · 정일영 · 김정호 · 김교홍 · 유동수 · 박찬대 · 윤준병 · 윤상현 · 김주영 · 서영석 · 남인순 · 김성주 · 이용선 의원 발의) … 13
- 6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송재호 · 조승래 · 최혜영 · 김진표 · 남인순 · 인재근 · 이용빈 · 임종성 · 허종식 · 정춘숙 · 양정숙 · 강선우 의원 발의) … 14
-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이형석 · 임호선 · 허종식 · 고영인 · 김윤덕 · 송재호 · 정춘숙 · 신영대 · 박광온 의원 발의) … 14
- 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양정숙 · 소병훈 · 최혜영 · 서영석 · 고영인 · 최종윤 · 최연숙 · 남인순 · 정춘숙 · 윤미향 · 권철승 · 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48) … 14
- 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 · 허종식 · 소병훈 · 인재근 · 이해식 · 김승원 · 문진석 · 박홍근 · 이정문 · 김경만 · 박상혁 · 조승래 · 설훈 · 홍성국 · 윤준병 · 윤영덕 · 오영환 · 윤재갑 · 이원욱 의원 발의) … 14
- 6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정운천 · 윤창현 · 최승재 · 강기윤 · 임이자 · 김영식 · 권성동 · 허은아 · 권명호 · 전주혜 · 이용 · 이종배 · 김석기 · 김용판 · 김미애 의원 발의) … 14
-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 · 김용판 · 이현승 · 김병욱 · 김석기 · 김기현 · 최승재 · 지성호 · 박성민 · 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 … 14
-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 · 유상범 · 권명호 · 이용 · 최승재 · 정희용 · 최형두 · 배현진 · 김성원 · 전주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8) … 14
-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 · 이형석 · 오영환 · 정청래 · 최혜영 · 고영인 · 김병욱 · 김정호 · 임오경 · 권인숙 · 김남국 · 고용진 · 백혜련 · 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1) … 14
-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권인숙 · 최혜영 · 조오섭 · 이용빈 · 이탄희 · 전해숙 · 박정 · 박성준 · 이낙연 · 강준현 · 인재근 · 강득구 의원 발의) … 14
-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정운천 · 이종배 · 성일종 · 송연석 · 양금희 · 이용 · 태영호 · 한무경 · 배준영 · 金炳旭 · 추경호 의원 발의) … 14
- 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 · 한무경 · 이태규 · 이영 · 허은아 · 양금희 · 권은희 · 윤창현 · 배현진 · 강기윤 의원 발의) … 14
- 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임오경 · 오영환 · 김남국 · 신현영 · 김승남 · 이병훈 · 박성준 · 서삼석 · 전용기 의원 발의) … 14
- 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 · 고영인 · 박성준 · 김민철 · 신동근 · 전해숙 · 인재근 · 이광재 · 이상현 · 정청래 · 우원식 · 이탄희 · 이원택 · 윤재갑 · 이수진(비) · 박영순 · 최종윤 · 김경만 · 오영환 의원 발의) … 14

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 · 안민석 · 김정호 · 이탄희 · 김병욱 · 이성만 · 임호선 · 홍정민 · 박정 · 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0) .....	14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 · 인재근 · 민병덕 · 김정호 · 맹성규 · 최중윤 · 최인호 · 한준호 · 박영순 · 서일준 · 양정숙 의원 발의) .....	14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맹성규 · 임종성 · 강선우 · 박홍근 · 최혜영 · 이수진(비) · 황운하 · 김경만 · 이성만 · 윤미향 · 김영호 · 안규백 · 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705) .....	14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임종성 · 강선우 · 박홍근 · 최혜영 · 이수진(비) · 황운하 · 고영인 · 이성만 · 윤미향 · 김영호 · 안규백 · 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732) .....	14
7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 · 이용빈 · 신정훈 · 황운하 · 박성준 · 최혜영 · 오영환 · 전해숙 · 고용진 · 김영식 · 김민철 · 이성만 · 정희용 · 성일종 · 조경태 · 이은주 · 김민석 · 정운천 · 양정숙 · 윤재갑 · 이수진 · 이영 · 김영배 · 류호정 · 김형동 · 남인순 · 윤미향 · 권철승 의원 발의) .....	14
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 · 정동만 · 양금희 · 김석기 · 김영식 · 허은아 · 박성민 · 서일준 · 한무경 · 이영 · 박대출 · 김웅 의원 발의) .....	15
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 · 김교홍 · 신동근 · 유동수 · 김정호 · 어기구 · 정일영 · 박찬대 · 송영길 · 윤관석 · 이성만 · 박용진 · 배진교 · 이용선 · 유정주 · 강병원 · 고영인 · 최중윤 · 맹성규 · 황운하 · 강득구 · 남인순 · 김원이 · 홍영표 · 최혜영 · 박영순 · 양경숙 · 허영 의원 발의) .....	15
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신정훈 · 오영환 · 이성만 · 이용빈 · 전해숙 · 최혜영 · 허종식 · 홍성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7) .....	15
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허종식 · 이은주 · 강선우 · 최중윤 · 이용빈 · 송옥주 · 김경만 · 최혜영 · 고영인 · 정춘숙 · 서영석 의원 발의) .....	15
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강기운 · 김예지 · 김희국 · 최형두 · 박성중 · 구자근 · 이종성 · 김희곤 · 윤영석 · 전봉민 의원 발의) .....	15
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소병훈 · 송갑석 · 기동민 · 김원이 · 최혜영 · 최중윤 · 강선우 · 이해식 · 서영석 의원 발의) .....	15
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이정문 · 전재수 · 박광운 · 고용진 · 남인순 · 변재일 · 윤관석 · 윤호중 · 양향자 · 강선우 의원 발의) .....	15
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정운천 · 윤창현 · 김영식 · 권성동 · 허은아 · 권명호 · 김미애 · 전주혜 · 이용 · 이종배 · 김석기 의원 발의) .....	15
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덕흠 · 성일종 · 강대식 · 박성중 · 김성원 · 홍문표 · 김태흠 · 추경호 · 최형두 · 권명호 · 윤창현 · 하영제 · 서범수 · 임이자 · 김희국 · 김영식 · 김석기 · 김형동 · 강기운 · 김희곤 · 이만희 · 이채익 · 신원식 · 서정숙 · 허은아 · 정점식 · 金炳旭 · 김예지 · 유경준 · 양금희 · 조경태 · 김승수 · 엄태영 · 홍석준 의원 발의) .....	15
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9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이용 · 이종배 · 한무경 · 김형동 · 박대출 · 서일준 · 이태규 · 권은희 · 김희국 의원 발의) .....	15
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 · 이원욱 · 인재근 · 홍익표 · 기동민 · 신정훈 · 이재정 · 김승원 · 박성준 · 서영석 · 송재호 · 양이원영 · 오영환 · 윤미향 · 이성만 의원 발의) .....	15
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백종현 · 지성호 · 김용관 · 구자근 · 한기호 · 임이자 · 최춘식 · 이주환 · 서일준 · 이태규 의원 발의) .....	15
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성일중 · 윤영석 · 구자근 · 이종성 · 박덕흠 · 엄태영 · 김석기 · 안병길 · 황보승희 · 김도읍 의원 발의) ..... 15
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 · 이종성 · 이명수 · 김용판 · 김예지 · 정진석 · 이종배 · 이주환 · 추경호 · 박덕흠 · 박성중 · 한무경 · 윤재옥 · 김성원 의원 발의) ... 15
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김승원 · 양정숙 · 오영환 · 최혜영 · 허종식 · 이용빈 · 권칠승 · 이수진 · 서영석 · 남인순 의원 발의) ..... 15
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김영진 · 송갑석 · 강선우 · 최혜영 · 홍성국 · 최종윤 · 송옥주 · 문진석 · 이탄희 · 이장섭 의원 발의) ..... 15
1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신정훈 · 오영환 · 이수진(비) · 이용빈 · 김성주 · 윤영덕 · 홍석준 · 윤재갑 · 백혜련 의원 발의) ..... 15
1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10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10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 · 오영환 · 김상희 · 김남국 · 인재근 · 이성만 · 고영인 · 신동근 · 허종식 · 송재호 · 이용빈 의원 발의) ..... 15
10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최종윤 · 정청래 · 조정식 · 김민기 · 김철민 · 이낙연 · 신동근 · 이규민 · 정춘숙 · 안규백 · 김경만 · 박성준 · 권칠승 · 김주영 · 홍기원 · 김교홍 · 권인숙 의원 발의) ..... 16
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송옥주 · 이용빈 · 유동수 · 김병욱 · 김윤덕 · 어기구 · 박용진 · 강병원 · 이성만 의원 발의) ..... 16
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임이자 · 배현진 · 안병길 · 권명호 · 이태규 · 정진석 · 김석기 · 김성원 · 전봉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8) ..... 16
1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이낙연 · 신동근 · 인재근 · 최종윤 · 안규백 · 허영 · 백혜련 · 오영환 · 박성준 · 이용우 · 고영인 · 양기대 · 홍성국 · 김철민 · 김경만 · 전혜숙 · 김윤덕 · 조승래 · 맹성규 · 김성주 · 서영석 · 양이원영 · 김영호 · 황운하 · 박찬대 · 권칠승 · 김남국 · 김두관 의원 발의) ..... 16
1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서삼석 · 박찬대 · 유동수 · 임종성 · 안호영 · 박용진 · 정춘숙 · 박정 · 김경협 의원 발의) ..... 16
1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이영 · 박성중 · 김석기 · 김용판 · 임이자 · 박대출 · 강기윤 · 이종배 · 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784) ..... 16
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 · 황희 · 오영환 · 최혜영 · 최종윤 · 김남국 · 이수진(비) · 윤건영 · 양정숙 · 남인순 의원 발의) ..... 16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김진표 · 박홍근 · 윤준병 · 이용빈 · 인재근 · 임오경 · 장경태 · 최혜영 · 한준호 · 허종식 의원 발의) ..... 16
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김승수 · 임이자 · 김예지 · 김용판 · 정운천 · 정진석 · 윤창현 · 김태호 · 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8) ..... 16
1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1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 · 인재근 · 문진석 · 김경협 · 김경만 · 박홍근 · 이정문 · 강선우 · 권칠승 · 박영순 · 민홍철 · 설훈 · 최혜영 의원 발의) ..... 16
1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장혜영 · 심상정 · 배진교 · 강은미 · 이은주 · 류호정 · 남인순 · 이동주 · 최혜영 · 홍정민 · 용혜인 · 최기상 의원 발의) ..... 16
1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송옥주 · 최혜영 · 남인

순 · 강선우 · 정춘숙 · 고영인 · 최종윤 · 이은주 · 허종식 · 서영석 · 이용빈 의원 발의) ..... 16

1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1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 · 인재근 · 권은희 · 김승수 · 한무경 · 김상훈 · 윤두현 · 이태규 · 윤희숙 · 권영세 · 김석기 · 金炳旭 의원 발의) ..... 16

1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최혜영 · 김진표 · 임오경 · 이용빈 · 인재근 · 박홍근 · 윤준병 · 허종식 · 한준호 · 장경태 의원 발의) ..... 16

1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1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전해숙 · 허영 · 이용우 · 홍성국 · 양기대 · 이수진(비) · 김경만 · 윤미향 · 정청래 · 오영환 · 박찬대 의원 발의) ..... 16

12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 · 신동근 · 김철민 ·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 도종환 · 서영교 · 변재일 · 서영석 의원 발의) ..... 16

12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김정호 · 김윤덕 · 윤후덕 · 박재호 · 장경태 · 이용빈 · 임종성 · 김경협 · 민형배 의원 발의) ..... 16

12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12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송재호 · 조승래 · 최혜영 · 김진표 · 남인순 · 인재근 · 이용빈 · 임종성 · 허종식 · 정춘숙 · 양정숙 · 강선우 의원 발의) ..... 16

12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박덕흠 · 성일종 · 강대식 · 박성중 · 김성원 · 홍문표 · 김태흠 · 추경호 · 최형두 · 권명호 · 윤창현 · 하영제 · 서범수 · 임이자 · 김희국 · 김영식 · 김석기 · 김형동 · 강기윤 · 김희곤 · 태영호 · 이만희 · 이채익 · 신원식 · 서정숙 · 구자근 · 金炳旭 의원 발의) ..... 17

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 · 신동근 · 김철민 ·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 도종환 · 조승래 · 서영교 · 변재일 · 서영석 · 김병기 의원 발의) ..... 17

1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소병훈 · 송갑석 · 기동민 · 김원이 · 최혜영 · 최종윤 · 강선우 · 이해식 · 서영석 의원 발의) ..... 17

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소병훈 · 허영 · 송갑석 · 기동민 · 김원이 · 최혜영 · 최종윤 · 강선우 · 이해식 의원 발의) ..... 17

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강병원 · 유동수 · 송옥주 · 김윤덕 · 강훈식 · 권인숙 · 박정 · 권칠승 · 김경만 의원 발의) ..... 17

1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박용진 · 송옥주 ·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 박찬대 의원 발의) ..... 17

1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 · 이인영 · 남인순 · 박홍근 · 기동민 · 이재정 · 김남국 · 류호정 · 맹성규 · 양이원영 · 오영환 · 이병훈 · 이수진 · 이원택 · 최종윤 의원 발의) ..... 17

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 · 김병욱 · 김정호 · 안민석 · 이탄희 · 고영인 · 임호선 · 김성주 · 이성만 · 홍정민 · 박정 의원 발의) ..... 17

1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과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부 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정은정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대응을 위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고 나성웅 차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박성민 · 김정재 · 강민국 · 정운천 · 송언석 · 김형동 · 강대식 · 김석기 · 이종배 · 이주환 · 金炳旭 의원 발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최종윤 · 정청래 · 조정식 · 김민기 · 안규백 · 김경만 · 권철승 · 박성준 · 이규민 · 허영 · 홍기원 · 김주영 · 김교홍 · 신동근 의원 발의)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 · 서동용 · 권철승 · 이장섭 · 윤재갑 · 이원택 · 전재수 · 최혜영 · 인재근 · 이동주 · 맹성규 · 김성주 · 박영순 · 윤관석 · 서영석 · 조오섭 · 송옥주 · 황운하 · 임호선 · 신정훈 · 윤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3)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 · 고영인 · 양이원영 · 강선우 · 홍익표 · 허영 · 주철현 · 조오섭 · 최혜영 · 박성준 · 한정애 · 신정훈 · 박홍근 · 김성주 · 김경만 · 위성곤 · 강훈식 · 김철민 · 맹성규 · 한준호 · 양정숙 의원 발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 · 강선우 · 홍정민 · 고영인 · 박성준 · 김경만 · 윤미향 · 이수진(비) · 김용민 · 서영석 · 김성주 · 오영환 · 임호선 · 김남국 · 최종윤 · 이은주 · 이용우 · 이재정 · 박영순 · 김상희 의원 발의)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 · 고용진 · 김병욱 · 김정호 · 이형석 · 허종식 · 김성주 · 홍정민 · 오영환 · 박정 · 서영석 · 양경숙 의원 발의)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 · 이성만 · 김성주 · 정일영 · 송영길 · 김교홍 · 유동수 · 박찬대 · 정운천 · 신현영 · 한정애 · 서영석 · 홍영표 · 인재근 · 배준영 · 신동근 · 박용진 · 최혜영 · 윤상현 · 맹성규 의원 발의)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 · 최혜영 · 문진석 · 김성주 · 강선우 · 고영인 · 허종식 · 김원이 · 김경협 · 인재근 · 신현영 · 권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1801)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 · 인재근 · 권은희 · 김승수 · 한무경 · 김상훈 · 윤두현 · 이태규 · 윤희숙 · 권영세 · 김석기 · 金炳旭 의원 발의)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홍성국 · 이원욱 · 조웅천 · 허영 · 강병원 · 최연숙 · 기동민 · 이상현 · 임호선 · 강선우 · 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841)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 · 안민석 · 기동민 · 김윤덕 · 김경협 · 한병도 · 황희 · 이개호 · 강선우 · 진성준 · 이광재 · 인재근 · 조승래 의원 발의)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이용빈 · 김민기 · 김성주 · 고영인 · 권철승 · 유동수 · 박정 · 김정호 · 김윤덕 의원 발의)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 · 권명호 · 이명수 · 김도읍 · 추경호 · 한무경 · 윤영석 · 조경태 · 김희곤 · 金炳旭 의원 발의)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고영인 · 김진표 · 김승원 · 이용우 · 권철승 · 이규민 · 강득구 · 김영호 · 강민정 · 강준현 · 홍정민 · 홍성국 · 오영환 · 전해숙 · 인재근 · 이형석 · 서영석 · 최혜영 · 이상직 · 김민철 · 황운하 · 이수진(비) · 정정순 · 김주영 · 김남국 · 김철민 · 임종성 · 유정주 · 김희재 · 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311)
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이상현 · 홍성국 · 조승래 · 강선우 · 이용빈 · 신영대 · 서동용 · 임호선 · 최종윤 · 윤준병 · 이탄희 · 허종식 · 정춘숙 · 이학영 · 송재호 · 이형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315)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양금희 · 김상훈 · 김형동 · 서일준 · 추경호 · 김용관 · 전

주혜 · 홍준표 · 김예지 · 윤두현 · 유상범 · 구자근 · 김승수 · 이영 의원 발의)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강선우 · 박성준 · 송재호 · 우원식 · 윤재갑 · 이상직 · 이성만 · 이수진(비) · 이용빈 · 전해숙 · 허종식 의원 발의)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 · 허종식 · 소병훈 · 인재근 · 강선우 · 이해식 · 김승원 · 문진석 · 박홍근 · 이정문 · 김경만 · 박상혁 · 조승래 · 설훈 · 홍성국 · 윤준병 · 윤영덕 · 오영환 · 윤재갑 · 조정식 · 이원욱 · 정춘숙 · 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222)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 · 신동근 · 김철민 ·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 도종환 · 조승래 · 서영교 · 변재일 · 서영석 의원 발의)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박용진 · 송옥주 ·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 박찬대 의원 발의)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 · 전재수 · 최인호 · 김정호 · 허영 · 김수홍 · 한병도 · 김경협 · 정춘숙 · 박용진 의원 발의)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 · 인재근 · 오영환 · 송재호 · 이수진(비) · 김영호 · 황운하 · 강준현 · 권칠승 · 기동민 · 김승원 · 김희재 · 김남국 의원 발의)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 · 이종성 · 김희국 · 최형두 · 조명희 · 박성중 · 구자근 · 김희곤 · 윤영석 · 전봉민 의원 발의)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 · 신동근 · 김철민 ·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 도종환 · 조승래 · 서영교 · 변재일 · 서영석 의원 발의)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성일중 · 박덕흠 · 김영식 · 권성동 · 이종배 · 김용관 · 김예지 ·

김성원 · 유경준 · 유의동 · 서정숙 의원 발의)

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권인숙 · 최혜영 · 조오섭 · 이용빈 · 이탄희 · 박정 · 이낙연 · 강준현 · 인재근 · 강득구 · 서영교 의원 발의)
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남인순 · 강선우 · 최혜영 · 정춘숙 · 이탄희 · 고영인 · 황운하 · 김승원 · 김경만 · 김홍걸 · 권칠승 · 민홍철 의원 발의)
3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 · 박덕흠 · 서병수 · 정희용 · 김은혜 · 金炳旭 · 윤재옥 · 최춘식 · 윤두현 · 김용관 · 홍석준 · 구자근 · 김예지 의원 발의)
3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 · 기동민 · 김상희 · 김희재 · 맹성규 · 서영석 · 송재호 · 양경숙 · 오영환 · 이성만 · 이수진(비) · 이용빈 · 인재근 · 조승래 · 최종윤 · 최혜영 · 한준호 · 허영 · 허종식 · 홍성국 의원 발의)
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 · 김교홍 · 김정호 · 어기구 · 유동수 · 정일영 · 이성만 · 윤관석 · 박찬대 · 이해식 · 이규민 · 홍기원 · 황운하 · 배진교 · 오기형 · 송영길 · 양기대 · 이용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1)
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 · 김교홍 · 김정호 · 어기구 · 유동수 · 정일영 · 이성만 · 윤관석 · 박찬대 · 이해식 · 이규민 · 홍기원 · 황운하 · 배진교 · 오기형 · 송영길 · 양기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4622)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최혜영 · 김진표 · 임오경 · 이용빈 · 인재근 · 박홍근 · 윤준병 · 허종식 · 한준호 · 장경태 의원 발의)
3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이영 · 박성중 · 김석기 · 김용관 · 임이자 · 박대출 · 강기윤 · 이종배 · 김승수 의원 발의)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

- 표 발의)(강선우·홍성국·이수진·남인순·서영석·김영호·정청래·윤미향·맹성규·송갑석·오영환·전용기·김경만·김남국·안규백·고영인 의원 발의)
3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최종윤·최혜영·김진표·임오경·이용빈·인재근·박홍근·윤준병·허종식·한준호·장경태 의원 발의)
4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박성준·황운하·홍성국·박영순·강득구·이성만·맹성규·전혜숙·김승원·강선우 의원 발의)
4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최혜영·허종식·송재호·고영인·김상희·신동근·오영환·이용빈·김남국·인재근 의원 발의)
4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정춘숙·김민기·강훈식·남인순·박재호·이용빈·김한정·윤미향·김성주·서영석 의원 발의)
4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 발의)(고영인·서동용·권철승·이장섭·윤재갑·이원택·전재수·최혜영·인재근·이동주·맹성규·박영순·윤관석·서영석·조오섭·송옥주·황운하·이수진(비)·윤미향·양정숙·민홍철·권인숙·이규민·홍성국·이용우·임호선·문진석 의원 발의)
4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최종윤·김진표·박홍근·윤준병·이용빈·인재근·임오경·장경태·최혜영·한준호·허종식 의원 발의)
4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이정문·신동근·김철민·안민석·박홍근·도종환·기동민·서영교·변재일·서영석 의원 발의)
4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김성주·홍성국·강선우·허종식·김원이·임호선·고영인·이탄희·서영석·권철승 의원 발의)
5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최종윤·송재호·조승래·최혜영·김진표·남인순·인재근·이용빈·임종성·허종식·정춘숙·양정숙·강선우 의원 발의)
5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 발의)(고영인·서동용·권철승·이장섭·윤재갑·전재수·최혜영·인재근·이동주·맹성규·김성주·윤관석·서영석·조오섭·송옥주·황운하·민홍철·권인숙·이규민·홍성국·이용우·임호선·문진석 의원 발의)
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이종성·김예지·이종배·권명호·김용관·정경희·김석기·임이자·최승재·배현진·김미애·정점식·전봉민·강기윤·윤창현 의원 발의)
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남인순·양이원영·권철승·윤재갑·박영순·이원택·인재근·김영배·박성준·김영호·강선우·윤미향 의원 발의)
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정춘숙·박용진·송옥주·유동수·임종성·송갑석·김철민·서삼석·기동민·박찬대 의원 발의)
5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강선우·전혜숙·허영·이용우·홍성국·황운하·이수진(비)·김경만·윤미향·오영환 의원 발의)
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인재근·김영진·송갑석·최혜영·서영석·홍성국·최종윤·송옥주·문진석·이탄희·소병훈·이장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0)
5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 발의)(정정순·문진석·김정호·민형배·이용우·이규민·이해식·임호선·윤재갑·송옥주·기동민 의원 발의)
5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허종식·윤관석·송영길·이성만·정일영·김정호·김교홍·유동수·박

- 찬대 · 윤준병 · 윤상현 · 김주영 · 서영석 · 남인순 · 김성주 · 이용선 의원 발의)
6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송재호 · 조승래 · 최혜영 · 김진표 · 남인순 · 인재근 · 이용빈 · 임종성 · 허중식 · 정춘숙 · 양정숙 · 강선우 의원 발의)
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이형석 · 임호선 · 허중식 · 고영인 · 김윤덕 · 송재호 · 정춘숙 · 신영대 · 박광운 의원 발의)
6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 · 양정숙 · 소병훈 · 최혜영 · 서영석 · 고영인 · 최종윤 · 최연숙 · 남인순 · 정춘숙 · 윤미향 · 권철승 · 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3948)
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 · 허중식 · 소병훈 · 인재근 · 이해식 · 김승원 · 문진석 · 박홍근 · 이정문 · 김경만 · 박상혁 · 조승래 · 설훈 · 홍성국 · 윤준병 · 윤영덕 · 오영환 · 윤재갑 · 이원욱 의원 발의)
6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정운천 · 윤창현 · 최승재 · 강기윤 · 임이자 · 김영식 · 권성동 · 허은아 · 권명호 · 전주혜 · 이용 · 이종배 · 김석기 · 김용판 · 김미애 의원 발의)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 · 김용판 · 이현승 · 김병욱 · 김석기 · 김기현 · 최승재 · 지성호 · 박성민 · 윤창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 · 유상범 · 권명호 · 이용 · 최승재 · 정희용 · 최형두 · 배현진 · 김성원 · 전주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8)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 · 이형석 · 오영환 · 정청래 · 최혜영 · 고영인 · 김병욱 · 김정호 · 임오경 · 권인숙 · 김남국 · 고용진 · 백혜련 · 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1)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권인숙 · 최혜영 · 조오섭 · 이용빈 · 이탄희 · 전해숙 · 박정 · 박성준 · 이낙연 · 강준현 · 인재근 · 강득구 의원 발의)
7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 · 정운천 · 이종배 · 성일종 · 송언석 · 양금희 · 이용 · 태영호 · 한무경 · 배준영 · 金炳旭 · 추경호 의원 발의)
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 · 한무경 · 이태규 · 이영 · 허은아 · 양금희 · 권은희 · 윤창현 · 배현진 · 강기윤 의원 발의)
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 · 임오경 · 오영환 · 김남국 · 신현영 · 김승남 · 이병훈 · 박성준 · 서삼석 · 전용기 의원 발의)
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 · 고영인 · 박성준 · 김민철 · 신동근 · 전해숙 · 인재근 · 이광재 · 이상현 · 정청래 · 우원식 · 이탄희 · 이원택 · 윤재갑 · 이수진(비) · 박영순 · 최종윤 · 김정만 · 오영환 의원 발의)
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신현영 · 안민석 · 김정호 · 이탄희 · 김병욱 · 이성만 · 임호선 · 홍정민 · 박정 · 고영인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0)
7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 · 인재근 · 민병덕 · 김정호 · 맹성규 · 최종윤 · 최인호 · 한준호 · 박영순 · 서일준 · 양정숙 의원 발의)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맹성규 · 임종성 · 강선우 · 박홍근 · 최혜영 · 이수진(비) · 황운하 · 김경만 · 이성만 · 윤미향 · 김영호 · 안규백 · 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705)
7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임종성 · 강선우 · 박홍근 · 최혜영 · 이수진(비) · 황운하 · 고영인 · 이성만 · 윤미향 · 김영호 · 안규백 · 송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732)
7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양향자 · 이용빈 · 신정훈 · 황운하 · 박성준 · 최혜영 · 오영환 · 전해숙 · 고용진 · 김영식 · 김민철 · 이성만 · 정희용 · 성일종 · 조경태 · 이은주 · 김민석 · 정운천 · 양정숙 · 윤재갑 · 이수진 · 이영 · 김영배 · 류호정 · 김형동 · 남인순 · 윤미향 · 권철승 의원 발의)

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강민국·정동만·양금희·김석기·김영식·허은아·박성민·서일준·한무경·이영·박대출·김웅 의원 발의)
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허종식·김교홍·신동근·유동수·김정호·어기구·정일영·박찬대·송영길·윤관석·이성만·박용진·배진교·이용선·유정주·강병원·고영인·최종윤·맹성규·황운하·강득구·남인순·김원이·홍영표·최혜영·박영순·양경숙·허영 의원 발의)
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강선우·신정훈·오영환·이성만·이용빈·전혜숙·최혜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4677)
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허종식·이은주·강선우·최종윤·이용빈·송옥주·김경만·최혜영·고영인·정춘숙·서영석 의원 발의)
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김예지·김희국·최형두·박성중·구자근·이종성·김희곤·윤영석·전봉민 의원 발의)
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소병훈·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최종윤·강선우·이해식·서영석 의원 발의)
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이정문·전재수·박광운·고용진·남인순·변재일·윤관석·윤호중·양향자·강선우 의원 발의)
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정운천·윤창현·김영식·권성동·허은아·권명호·김미애·전주혜·이용·이종배·김석기 의원 발의)
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덕흠·성일종·강대식·박성중·김성원·홍문표·김대흠·추경호·최형두·권명호·윤창현·하영제·서범수·임이자·김희국·김영식·김석기·김형동·강기윤·김희곤·이만희·이채익·신원식·서정숙·허은아·정점식·金炳旭·김예지·유경준·양금희·조경태·김승수·엄태영·홍석준 의원 발의)
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이용·이종배·한무경·김형동·박대출·서일준·이태규·권은희·김희국 의원 발의)
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이원욱·인재근·홍익표·기동민·신정훈·이재정·김승원·박성준·서영석·송재호·양이원영·오영환·윤미향·이성만 의원 발의)
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백종헌·지성호·김용관·구자근·한기호·임이자·최춘식·이주환·서일준·이태규 의원 발의)
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성일종·윤영석·구자근·이종성·박덕흠·엄태영·김석기·안병길·황보승희·김도읍 의원 발의)
9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이종성·이명수·김용관·김예지·정진석·이종배·이주환·추경호·박덕흠·박성중·한무경·윤재욱·김성원 의원 발의)
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김승원·양정숙·오영환·최혜영·허종식·이용빈·권칠승·이수진·서영석·남인순 의원 발의)
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김영진·송갑석·강선우·최혜영·홍성국·최종윤·송옥주·문진석·이탄희·이장섭 의원 발의)
1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신정훈·오영환·이수진(비)·이용빈·김성주·윤영덕·홍석준·윤재갑·백혜련 의원 발의)
1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오영환·김상

희 · 김남국 · 인재근 · 이성만 · 고영인 · 신동근 · 허종식 · 송재호 · 이용빈 의원 발의)

**10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최종윤 · 정청래 · 조정식 · 김민기 · 김철민 · 이낙연 · 신동근 · 이규민 · 정춘숙 · 안규백 · 김경만 · 박성준 · 권철승 · 김주영 · 홍기원 · 김교홍 · 권인숙 의원 발의)

**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송옥주 · 이용빈 · 유동수 · 김병욱 · 김윤덕 · 어기구 · 박용진 · 강병원 · 이성만 의원 발의)

**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임이자 · 배현진 · 안병길 · 권명호 · 이태규 · 정진석 · 김석기 · 김성원 · 전봉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8)

**1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이낙연 · 신동근 · 인재근 · 최종윤 · 안규백 · 허영 · 백혜련 · 오영환 · 박성준 · 이용우 · 고영인 · 양기대 · 홍성국 · 김철민 · 김경만 · 전혜숙 · 김윤덕 · 조승래 · 맹성규 · 김성주 · 서영석 · 양이원영 · 김영호 · 황운하 · 박찬대 · 권철승 · 김남국 · 김두관 의원 발의)

**1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 · 서삼석 · 박찬대 · 유동수 · 임종성 · 안호영 · 박용진 · 정춘숙 · 박정 · 김경협 의원 발의)

**1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이영 · 박성중 · 김석기 · 김용관 · 임이자 · 박대출 · 강기윤 · 이종배 · 김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784)

**1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권철승 · 황희 · 오영환 · 최혜영 · 최종윤 · 김남국 · 이수진(비) · 윤건영 · 양정숙 · 남인순 의원 발의)

**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김진표 · 박홍근 · 윤준병 · 이용빈 · 인재근 · 임오경 · 장경태 · 최혜영 · 한준호 · 허종식 의원 발의)

**1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 · 김승수 · 임이자 · 김예지 · 김용관 · 정운천 · 정진석 · 윤창현 · 김태호 · 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8)

**1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 · 인재근 · 문진석 · 김경협 · 김경만 · 박홍근 · 이정문 · 강선우 · 권철승 · 박영순 · 민홍철 · 설훈 · 최혜영 의원 발의)

**1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장혜영 · 심상정 · 배진교 · 강은미 · 이은주 · 류호정 · 남인순 · 이동주 · 최혜영 · 홍정민 · 용혜인 · 최기상 의원 발의)

**1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김성주 · 송옥주 · 최혜영 · 남인순 · 강선우 · 정춘숙 · 고영인 · 최종윤 · 이은주 · 허종식 · 서영석 · 이용빈 의원 발의)

**1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최연숙 · 인재근 · 권은희 · 김승수 · 한무경 · 김상훈 · 윤두현 · 이태규 · 윤희숙 · 권영세 · 김석기 · 김炳旭 의원 발의)

**1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최종윤 · 최혜영 · 김진표 · 임오경 · 이용빈 · 인재근 · 박홍근 · 윤준병 · 허종식 · 한준호 · 장경태 의원 발의)

**1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강선우 · 전혜숙 · 허영 · 이용우 · 홍성국 · 양기대 · 이수진(비) · 김경만 · 윤미향 · 정청래 · 오영환 · 박찬대 의원 발의)

**12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 · 신동근 · 김철민 ·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 도종환 · 서영교 · 변재일 · 서영석 의원 발의)

**12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 · 김정호 · 김윤덕 · 윤후덕 · 박재호 · 장경태 · 이용빈 · 임종성 · 김경협 · 민형배 의원 발의)

**12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 발의)(최종윤·송재호·조승래·최혜영·김진표·남인순·인재근·이용빈·임종성·허종식·정춘숙·양정숙·강선우 의원 발의)

12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이명수·박덕흠·성일중·강대식·박성중·김성원·홍문표·김태흠·추경호·최형두·권명호·윤창현·하영제·서범수·임이자·김희국·김영식·김석기·김형동·강기윤·김희곤·태영호·이만희·이채익·신원식·서정숙·구자근·金炳旭 의원 발의)

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이정문·신동근·김철민·안민석·기동민·박홍근·도종환·조승래·서영교·변재일·서영석·김병기 의원 발의)

1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인재근·소병훈·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최종윤·강선우·이해식·서영석 의원 발의)

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인재근·소병훈·허영·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최종윤·강선우·이해식 의원 발의)

1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정춘숙·강병원·유동수·송옥주·김윤덕·강훈식·권인숙·박정·권칠승·김경만 의원 발의)

1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정춘숙·박용진·송옥주·유동수·임종성·송갑석·김철민·서삼석·기동민·박찬대 의원 발의)

1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김원이·이인영·남인순·박홍근·기동민·이재정·김남국·류호정·맹성규·양이원영·오영환·이병훈·이수진·이원택·최종윤 의원 발의)

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 발의)(신현영·김병욱·김정호·안민석·이탄희·고영인·임호선·김성주·이성만·홍정민·박정 의원 발의)

1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

정 제13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3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들어야 하는데 우선 2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2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제2법안심사소위원장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의 심사를 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 11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5건, 수정안 7건, 대안 1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29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7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2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본 의원과 고영인 의원, 강선우 의원, 강병원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정춘숙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4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1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감염병 위기 수준 심각 단계의 정보 발령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축, 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 의약외품, 장비 등 용어를 정비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되어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윤 의원, 정춘숙 의원, 최혜영 의원, 박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1개설 위반 또는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 보류 및 환수 근거와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한 부당 이득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의료 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원이 의원, 허종식 의원, 김상희 의원, 류성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의 확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감액 근거 마련, 추후 납부기간 10년 미만으로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 완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용도가 수급자 개인에게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여 명칭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하고 사문화된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 근거를 삭제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 청구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의 경우 지역돌봄체계의 변화 가능성과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도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지급 근거를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 제출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유전자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되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허용 기준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감독대상기관에 유전자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강선우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이종성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 허종식 의원, 정정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

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집단급식소가 위생관리 관련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공유주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책임관리자 지정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법정 표시 의무사항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 백종현 의원, 이종성 의원, 김정재 의원, 신동근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 제출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의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범위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급여량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급여량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보건복지부가 2021년까지 대안을 도출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기윤 간사님께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심사보고에 앞서서 오늘 오전까지 1소위·2소위 법안소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1소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8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2건, 수정안 3건, 대안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48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2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숙인 복지시설의 장 등이 해당 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노숙인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대신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한 무연고 노숙인의 잔여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불명확한 법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기관에 지원대상자 주소지 이외의 보장기관 등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도입하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체계를 고려하여 공무원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 부정교부 및 유용과 관련한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 중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 처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김성주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조명희 의원, 이종성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있어서도 의사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이 인정됨을 명시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이후 평가인증기관의 지정이 늦어져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정문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

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양기관 운영 허가에 대한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며칠간 열정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두 분 소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철승입니다.

우선 1소위·2소위 위원님들, 법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1소위 관련법의 심사 참고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심사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안 보여서 확인차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번호 833번이 심사 참고자료에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낸 내용이 특정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그런 의료인들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진 건지, 의료법 이번에 하면서 빠진 건지, 빠지게 되면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것 혹시 두 분 간사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가운데 말씀 주실 수 있으면……

○강병원 위원 간사께서 설명을 하시면……

○위원장 김민석 전문위원이나 누가 조금 확인하셔서 간사님들께 말씀 주시지요.

○김성주 위원 예, 제가 설명하지요.

○위원장 김민석 예, 김성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아니, 1소위, 간사가 있는데 왜…… 소위원장이 하시는 게 맞지.

○김성주 위원 아, 의료법은 내가 아닌가?

○강병원 위원 예.

○김성주 위원 헛갈리네……

○강병원 위원 많이 헛갈리겠어요, 보니까. 다음부터는 야당 간사가 오거든 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승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을 다른 의원들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좀 있어서…… 그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권철승 위원 여기서 토론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특별히 숙성을 하거나 논의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이나 이런 데서도 반대의견을 보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앞뒤가 안 맞지요.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보니까 무면허시술 교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넣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진전된 합의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번에는 지나갔으니까 제가 지나간 것 가지고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는 꼭 최우선으로 검토해 주시고 합의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 상황에 대한 확인은 된 것 같고요, 다음 법안소위 때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58조 6항은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에서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면밀한 축조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1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4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6항 및 2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7항부터 4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3항부터 63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5항부터 83항까지 1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6항부터 9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94항부터 9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99항 및 제10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05항부터 112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5항 및 제1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18항 및 제1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2항 및 제12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27항부터 제133항까지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66조 3항 및 제79조의2 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정하거나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해서 재정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수정안과 대안의 경우 당초 발의된 법안과 비교할 때 또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해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소관 총 27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주에 걸친 기간 동안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강기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즉시분리 제도나 전문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절차 전반이 정비되어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조치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상담·교육 등을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등의 기반이 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현장 맞춤형 심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전자 치료기술 연구의 허용조건을 확대하고 DTC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유전자 치료기술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금주구역 지정 등 절주 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원

활한 배출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를 더욱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 심사는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심의 의결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위원장님과 강기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님, 김성주 제2법안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을 명심하여 의결해 주신 법안이 국민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결과 핵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되어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으며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게 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HACCP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급식 등 취약분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식중독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태, 햄거버패티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

해 그 효과가 확인된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영업시설의 공유·사용을 통한 영업자의 창업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국민의 식생활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법안들을 적극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맑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엄중한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입국자 등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운영 근거를 보완하고 의료·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과 약국 개설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감시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하여 마스크 지급 등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강 위원님, 의사……

○강기윤 위원 현안 질의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십시오.



혹시 또 다른 분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강기윤 위원** 장관님, 1·2 법안소위 하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됴데도 불구하고 조금 정부가 선제적으로 빨리 해야 될 부분은, 시급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빨리 통과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이 많이 통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심의해 준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감염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으로 오늘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는 부분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도 마찬가지로 일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차장 나성웅** 감사드립니다.

○**강기윤 위원** 오늘 우리가 오전 12시 30분까지 사실은 심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하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권철승 위원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시급하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이런 쪽의 의견이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아침에, 코로나 백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장관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부분이 효과가 90%다 또 94.5%다 이렇게 많이 얘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우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왜 백신 구매비를 포함하지 않았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위 다룰 때 9650억을 추가 편성해서 또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고 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결소위에서 통과된 부분이 전체회의에 통과되지 못한 부분을 정말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 계신 우리 여당 위원들이 좀 책임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 잘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장관님이 꼭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방송을 아침에 제가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전에 나올 때 70% 효율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효과인지 효율성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정확성이 70%,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화이자 90%고 모더나가 94.5%, 방송에 의하면 그렇

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70%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오늘 방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아마 OEM 방식을 채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문자 생산 방식, 이렇게 해서 아마 개발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생산을 우리 국내에서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모더나는 사실은 영하 20도 정도 보관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이자 영하 70도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보고만 들은 겁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번에 제가 걱정을 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전략적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전략적 부분이 저는 아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제휴를 통해서 생산기지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쪽으로 저는 빨리 판단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빨리…… 다른 나라들은, 영국이나 미국은 올 12월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지금 방송에 나오기 전에 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어떤 관계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깜짝 이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70%라고 했는데 아니,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합니까마는 무엇보다도 품질이 또 효과가 검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70%짜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쪽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서 하는지 하는 부분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일련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속 시원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강기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지금에는 어느 백신들이 몇

% 효과가 있다고—자사들 주장입니다, 학문적으로 그게 밝혀진 것은 아니고—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에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추이를 봐 가면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백신들은 다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컨택트를 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5건 정도 이상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3상 이상에 들어가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은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94% 효능이 있다고 그리고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90%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자사들의 소수의 피험자들 대상으로 한 결과일 뿐이고 학문적으로는 그게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가장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확률이라고 그럴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한 그런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70%라는 것은 두 가지 실험집단 중에서 한 쪽은 60%가 나오고 한 쪽은 9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피험자들의 비중이 60% 나온 쪽은 비중이 조금 적고 90%는 많아 가지고 그것을 합치면 이제 평균 70% 되는 그런 수준인데, 제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들은 바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90% 나온 그 효능에 맞추어서 제품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이 각각 다른 함량을 투입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90%의 효과가 나온 그것이 앞으로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함량을 맞추어서 제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생산기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상당량을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스트라제네카도 기존에 접근하고 있는 여러 다수의 백신 생산업체 중의 하나일 뿐이지는 않지만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서로 계약을 논의하고 있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도 다 우리가 지금 서로 계약관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물량은 저희들이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000만 명분의 물량을 최소한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상당히 좀 더 많은, 그것보다 꽤 더 많은 양을 계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릴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빈틈없이 장관님이 준비를 잘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단, 깜짝 이벤트는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하다가 전략적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오늘 전략적 부분이 다 노출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하고 있다까지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강기윤 위원 그러면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 해서도 안 됩니다. 더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해 주는 것이 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전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이벤트 하는 식으로 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 고요.

두 번째, 지금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집단면역 이야기하면서 60%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전 국민들한테 꼭 3000만 개만 준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유료로 하든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이 다 맞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집단면역 이야기하는데 저는 집단면역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학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것 불안합니다. 어떻든 5000만 개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무상을 하든 유상을 하든 맞고자 하는 사람은 맞게 해주어야 되는 게 그게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떤든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맞는다 하는데, 12월 달에 맞는다 하는데 우리는 어찌 됐냐고 하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큼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불식시키고 안심을 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마음의 불안이 더 오히려 코로나를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코로나도 퇴치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점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집단면역에 대한 부분도 3000만 개에서 5000만 개 올리는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정부의 목표량은 최소치가 60%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그 이상의 물량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말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했을 때 그것을 몇 개월 이내에 또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에 따르는 사후적인 책임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정부 당국 책임자로서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맞히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저희들이 목표한 양만큼 다 못 가고 있습니다.

백신은 세계 어느 나라든 특정 연령 그룹은 백신에 거부반응을, 심리적으로 안 맞겠다 그런 연령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이기는 한데, 인플루엔자의 경우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도 5000만 도즈를, 5000만 명분을 다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꼭 맞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조사해 보려고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참조를 해서……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대 물량이 부족하지 않을 그 정도의 양

이상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운 위원** 안 맞으면 나머지 것 내가 다 사겠습니다. 내가 사 가지고 내가 팔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김미애 위원** 저도 간단하게……

**○위원장 김민석** 김미애 위원님 하고, 서정숙 위원님 하고, 조명희 위원님하고…… 다 하실 모양이네요.

그러면 김미애 위원님 하시고요.

**○김성주 위원**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위원장 김민석** 예, 여기 하시고 그다음에 할게요.

**○강병원 위원** 저는 현안질의가 아닙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장 김민석** 김미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안 질의입니다.

어제인가 셸트리온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키트에 대해서 미국은 FDA 승인을 받아서 14세 이상은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언제쯤 가능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 장관님, 누구라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먼저 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식약처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궁금해 하시는, 질문하시는 내용은 항원 검사키트나 항체 검사키트를 말씀하시는 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각각 한 개씩의 제품으로서 승인이 돼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두 제품이 다 전문가용으로 지금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항원검사키트의 경우에도 비강 안까지 이렇게 깊숙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기는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감염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갖추고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키트라서 검사 속도에 있어서는 PCR 검사처럼 6시간을 배양을 해서 검사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20~30분 정도밖에는 소요 안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자가채취용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항체 채취방식, 항체 검사키트의 경우에도 채

혈을 하는 방식으로 주사기를 통해서 혈액을 뽑고 그것을 검사키트에 넣어야 되는 방식이라서 이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자가진단용으로는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와 있거나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품들도 아직까지는, 지금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방식의 제품은 아직은 좀 안 돼 있어서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비단 정확도에 있어서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이런 실제 적용사항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대규모 검사가 진행된다면 질병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현재의 플린 검사라든지 다른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어쨌거나 미국은 집에서든 자가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예, 지금 현재……

○**김미애 위원** 30분 내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의료기관용만 지금 승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도 우리가 인근에 있는 아무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게라도 된다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감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쉽게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여러 가지 대안들 놓고 같이 저희들도 관계기관들끼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인플루엔자에 대한 감염 여부하고, 독감 여부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도 어쨌든 저희가 승인을 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적절한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키트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성도 있지만 방금 식약처장님 답변 과정에서 검체 채취,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진단법의 검체 채취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의료법의 규정입니다. 그 조항 때문에 신속검사법이 허가가 될 때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의료인이 검체 채취를 해야 된다는 그 뜻으로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로 집에서 검사한다는 것은, 검체 채취 자체를…… 물론 미국에서 어떤 신속검사법을 쓰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검체 채취에 대해서도 자가 검체 채취를 허용한다면 우리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의료행위를 일반인이 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정부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정부에서 아셔야지요. 그리고 그게 국내에 도입 가능하면 우리도 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일한 키트라 하더라도 우리 의료법상 특정 행위 자체를, 검체 채취 행위 자체를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료법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강 위원님, 현안질의 아니시면 신현영 위원님 하시고 한 분 더 하고 하시면…… 괜찮으시면……

○**강병원 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신현영 위원님 현안질의신 것 같으니까 하시지요.

○**신현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신속 항원진단키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승인이 한 가지 됐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같이 당에서도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일환으로, 지금 국내 일일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5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2.5단계 격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3차 유행에서 우리가 단계 격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답답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원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음성 예측도는, 검사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을 때 실제로 음성일 가능성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최근에 집단 발병되고 있는 상

황에서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집단 발병되면서 내부에서 또 발생이 됐지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최근 그렇게 집단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위험군 집단시설에서 출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 특히 면회를 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신속 항원진단키트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조금은 음성인 경우에 그 집단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특히 요양병원에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저희 아버님도 그런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면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면회를 못 할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양기관에서의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족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신속 항원키트에서 음성이 나오면 환자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이 있는 그런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 확진 환자 나올 것을 감수하고 보고 있는 일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나 아니면 소아과에서도 감기 증상 있는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요. 조금은 이런 신속 항원진단키트를 확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고 우리 국민들이 단계 격상을 하면서 뻑뻑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조금은 선제적인 그런 방역 그리고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 말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 취지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로 들으셨던 일선 의료기관이라든지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는 간호사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의료인으로 간주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검체 채취할 수 있어서 신속 항원진단법을 다 사용하도록 이미 다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진단법을 식약처에서 승인을 할 때, 의료기관이라는 말 뜻이 그런 뜻입니다. 즉 간호사가 있는 데서는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 신속 항원진단법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1차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군부대나 아니면 집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군부대의 경우는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 수 있는데 1차 의료기관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 상용화됐나요, 이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현영 위원** 가격 정해지고 시판이 됐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한…… 정확한 일자지는 모르지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면 사용 실태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서정숙 위원님 하시고, 강병원 위원님 하시고, 조명희 위원님 하시고, 이종성 위원님 하시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숙 위원님 하시지요.

**○서정숙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서정숙 위원**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전파의 양상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기복을 또 보여 주고 최근에 와서는 정말 폭발적인 증가로 정말 당국과 국민 모두 가슴을 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것이 장기화된다고 보고 백신 확보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저희들은 국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5000만 국민의 60%인 3000만 명분을 기본으로 해서 1000만 명분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서정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실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거기는 이미 선금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서정숙 위원** 지급해…… 그건 확실하시고, 2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신은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확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서정숙 위원** 플랫폼은 핵산백신, 예를 들면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모더나사와 화이자가 RNA 백신이고, 그다음에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또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이 들어가 있고, 불활화 백신에는 시노팜, 우한, 베이징…… 3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언론에 주로 보도되고 있는 화이자와 모

더나가 핵산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바이러스 전달체 이런 것들이 백신인데 장관님, 이러한 확보의 카테고리 속에 불활화 백신도 확보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정부가 불활화 백신에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 제약회사에서 불활화 백신에 대해서 접근해서 그쪽에서는 상호 생산이나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우리나라 제약사가 중국산 불활화 백신을 도입하려고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서정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플랫폼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성이 높은 것이 불활화 백신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소요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그렇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런데 불활화 백신이 다른 질병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어떤지 또 우리가 겪어봐야 되는 건데 초기 발병 사례 통계도 숨겨 온 의혹 있는 중국의 백신 관련 발표 자료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또 그 백신을 만약에 그 회사에서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임상시험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정숙 위원** 기본적인 건 기업들도 살펴겠지만 백신이란 것이 단기적 효과성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의 명확성에도 의문이 있는 나라의 백신을 코로나19 감염병이고 또 우한으로부터 왔는데 미증유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부 당국도 아무리 기업이 거기랑 접촉해서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모든 백신이 신중

백신 들어올 때는 식약처에서 안전성 검사를 상당 기간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검증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쓰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검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는 다 거치게 됩니다.

○**서정숙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강병원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처음 들어왔는데 그 처음 맞는 국정감사가 정말 황당하게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 국정감사를 보이콧을 한 거예요. 참 되게 황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야당만 국정감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20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국민들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자,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벌써 85일이 지났는데요.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1소위에 있습니다만 법안소위를 이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18일은 하루 종일 했고요, 19일 같은 경우는 만나절밖에 못했고 오늘 또 만나절 했습니다. 결국 이틀밖에 못한 건데요, 아직도 법안들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그 법안 하나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셨을 거고 토론도 하셨을 거고 보좌진들하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법안 하나를 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법이 다 결국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이익이 되게끔, 행복을 키우게끔 혹은 정부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부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 축소하고, 그런 것 다 국민의 이익에 결국 귀결되기 위해서 그런 법안들을 냈을 텐데요. 저는 정기국회 100일 동안 제가 속해 있는 법안소위가 단 이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권철승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냈던 수많은 법들이 이 100일 동안 단 이틀 만에 어떻

게 다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한번 그런 법안들이 논의는 되고, 어떤 경우도 토론하면 다 타협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 그래 가지고 정기국회 100일 동안 단 이틀만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국회 운영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양해야 될 구태 중의 구태입니다.

우리가 법 만들려고 국회의원 됐지 맨날 싸움 하려고 국회의원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위원장이나 간사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의원들의 이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법안소위를 충실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안소위 한 번 잡는데 이렇게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하는 게 뭘니까? 저는 이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간사께서는 협의하셔 가지고 법안소위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 주십시오. 그게 저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위가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을 책임지는 상임위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대단히 전적으로 다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해 주셨고요.

법안소위 진행일정에 대해서는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두 간사님들이, 위원장과의 협의와는 별개로 간사님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법안소위 쪽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 누구 하나 토를 달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밤을 새서라도 진행돼야 되는 일들이니까 이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 위원님 하시고, 이종성 위원님도 하신다고 했던가요? 하시나요? 일단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하시지요.

조 위원님 해 주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아까 먼저 손드셨어요.

○曹明姬 위원 감사합니다. 범절이 대단하십니다.

이번이 두 번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때 하고요.

저는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언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7분이 아니고 5분이라…… 그런데 제가 오늘 4개를 준비했는데 현안질의 2개만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제언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3차 재유행 확산되는 시점에 많은 유익한 법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보임을 새로 맡아서 보건복지부·식약처 그리고 질병청으로부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화 부분이, 사실 정보화는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보화가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웠던 점은 각 기관이 모두 정보화 분야는 가야 할 길이 정말 멀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컨대 질병관리청은 담당과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런데 1차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데이터가 관리되다 보면 칸막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전체 총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화의 고도화, 저는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앞으로 제가 복지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일상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줄폐업을 하고 있지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적 방역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명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러프하게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그리드 방역시스템 도입을 저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이 수도권과 그다음에 충청·호남·경북·경남 그다음에 강원·제주권으로 광역별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역을 좀 더 작은 단위로 그리드를 세분화하고 각 지역의 특색과 코로나 발생이력 그러한 과학적인 기반의 팩트를 분석해서 방역의 상세기준을 만든다면 예를 들자면 강원도라도 산간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있고 같은 경북지역이라도 아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산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그리드라는 것은 에너지에서 쓰는 말인데요, 용어인데요 좀 더 촘촘하게 그 지역을 세분화해서 해 준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생계유지 걱정 좀 덜 하고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정보를 바로 접하면서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언이고요.

위원장님,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위원장 김민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들 예측하고 온 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체되지 않게…… 하나 더 하시지요, 가급적 압축적으로.

○**曹明姬 위원** 하나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기술인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정책을 세우고 나서 정할 때 과학기술 합리성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월성 1호기는…… 저는 과방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비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아주 정국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8·15 집회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회 참석인원이 파악되지 않는다, N차 전파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 어제 민주노총이 강행한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 자체를 촉구했지만 원천봉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집회는 막고 진보 집회는 허용한다는 지적에 오히려 정부관계자는 이중잣대라기보다는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거의 불가능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성향에 따라 방역대응이 차별화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치회생양 만들기에 몰두하다가 방역기준의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형 정밀방역 조치 내용을 보면 헬스장 샤워실은 막고 사우나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방역대책을 내놓으면 결국 정부 방역의 신뢰도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철저히 좀 더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 과학기술 없이는 정말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의 같지 자 정책에서 과학기술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6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불안을 감수하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도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정치가 개입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외형적으로는 광역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보시면 시군 단위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이 먼저 1.5단계를 하고, 나머지는 1단계에 머물고 있었고요. 강원권의 경우에도 강원 영서지방은 1.5단계지만 영동지역은 아직 1단계로 있고 그게 각 시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 단위가 모여서 좀 전체적으로 광역권으로 가자고, 그 내에서 시군 단위로 권역으로 오려면 각 시도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군간의 거리두기를 달리할 것인지 지금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달라진 방역체계 속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광역체계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은 병상의 자원 자체가 시군에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상관리체계는 광역단위로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광역단위로 방역체계를 짜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거리두기 자체는 시군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曹明姬 위원**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역이고요, 생활권은 좀 더 세분화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단위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코로나 발생이력에 따라서 좀 더 실질적으로 세분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세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방역해야 된다는 것 정말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처음 발발되고 난 뒤부터 매 현장에 있는 역학조사관들이 가져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저희들이 지식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방금 예를 들으셨던 사우나의 경우에도 사우나의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났는지를 그때그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났다 해서 사우나 전체를 우리가 위험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어떤 특정 부분이 그렇게 되는가, 어떤 행위가 거기에서 감염을 일으키는가를 보고 있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경험을 기초로 방역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정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또는 집단에 따라서 방역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나가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 외에 지자체가 있고 또 여러 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집회에 대해서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방역 당국은 항상 동일합니다.

○**曹明姬 위원**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종성 위원님 해 주시지요.

○**이종성 위원**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장관님, 아까 우리 당 소속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 확인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속진단키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검체 채취 행위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니까 구강 깊숙이 해서 검체 채취해야 되는 그 진단키트의 경우에는 검체 채취 행위 자체가, 그런 자체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있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성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자기 손가락에 가서 박혔는데 그것 빼는 것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그것은……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종성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게 왜 의료행위라서 금지돼야 되는 행위인지. 그러면 이것을 동네

병원에 가서는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러니까 병의원…… 간호사들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러면 동네 병원 이 부분을 신속진단키트를 보급을 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허가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신속진단키트를 좀 보급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자기가 가서 하고 싶을 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급하고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미국도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14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반드시 채취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본인이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동에 대해서는.

○**이종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한테 그것을 전격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식약처 소관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현재 허가받은 제품 각각 한 가지씩이 전문가용으로 일단 신청이 됐고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사실상 자가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앞으로 집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의 허가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안전성이나 실제 실행 가능성 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평가를 해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아까 14세 이하에 대한, 제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사실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검체 채취만 집에서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실제 검사 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성 위원 정작 제가 준비한 질문을 못 해 가지고.

아까 조명희 위원님께서 대략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 일찍 깨달으셨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집회·시위도 이제 조화롭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저께 그리고 이번 주말에 민주노총한테 허용하는 방식으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허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10월 달 또 9월 달 집회를 원천 봉쇄, 차벽을 세우면서까지 원천 봉쇄했던 그런 방식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인지……

이게 지금 쿠폰 살포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1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거기에 방역에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는 오락가락하면서 그 피해, 그 부담, 그 책임 모든 것들은 다 국민들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좀 코로나 확산세가 강화됐다 하면 국민들한테 계속 만나지 마라, 나가지 마라 하고 가게 문 닫아라,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는 오락가락 그때 그때 때에 맞춰서 그냥 집회를 허용했다가 막았다가, 쿠폰을 뿌렸다가 또 중단했다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고 방역당국은 아무래도 방역을 강조해서 일관되게 방역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경제라든지 일상의 국민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 부처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제를 좀 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것이 방역에 도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통제 가능 범위 속에 들어오면 경제를 좀 더 보살피는 쪽으로 정책의 방점이 두어지고 그러다가 또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다시 또 방역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락가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

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방역과 경제를 같이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일관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강화될 때도 있고 약화될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성 위원 그러니까 정부 당국들이 다른 나라 당국들이 아니잖아요. 전체 당국들이 대한민국 당국자들인데 각 부처들이 좀 균형 있게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 해 주시고요.

○전봉민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그 사이에 좀 지역사회에 잠복돼 있던 숨은 확진자들이 전파를 일으키면서 3차 유행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지금 현재 3차 유행이 예전 대구의…… 3월 달하고는 유행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전봉민 위원 현재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시다. 10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해서 주별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숫자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숫자는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비율은 한 15~20%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지금 현재 690명, 제가 받은 기간 동안에 69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별로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하고 똑같아요. 서울·경기 나머지 지역도 고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첫째 주에 58명, 43주에 58명, 44주에 96명, 45주에 100명, 46주에 139명, 47주에 203명까지도 간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하셨던 경제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안전을 두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데이터라든지 제가 봐도 이 데이터를 보면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했었어야 돼요. 소위 정부가 이것을 방기…… 솔직히 이 자료를 보시면…… 장관님 자료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매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10월 12일 날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상향 조정하는데 11월 19일 날 우리가 1.5단계로 상향했다는 말이지요.

이 기간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관님이 오늘 말씀하셨던데 20~30대가 지금 28%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장관님하고 보건복지부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숨어있는 감염자들 찾아낼 것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나름대로 했던 것이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인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검사를 수도권에 대해서는 매 2주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었냐라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경제도, 충분히 저도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황은 앞전 3월 달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고 장관님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이 수치를 보면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늘어나는 숫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장관님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세밀하게 정부에 보고해서 정말 K-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숨은 감염자들을 먼저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다음은 끝으로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할까 했는데 또 우리 김원이 위원님이 있으셔서 최연숙 위원님 하시고 김원이 위원님 질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장관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키트 부분에서 신종플루도 있고 코로나19도 있는데 코로나19에 묻혀서 신종플루가 지금 대두가 되지를 앓고 있는데 사실은 같이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두 개 다 같이 검사할 수 있는 게 곧 나올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언제 나오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12월 3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의 경우 시험을 어떻게 치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그것은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아마 독감하고 코로나19를 동시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나와 있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이미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최연숙 위원**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제가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10월 30일 날 식약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러면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홍보가 되지를 않아서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하셔서 가지고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열이 나면 코로나 검사만 하는 거예요. 또 네거티브 나오면 또 다시 가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각종 국가시험에서 확진자나 밀접접촉자로 자격리된 사람들의 응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국가시험을 각 부처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의 경우에 시험 응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수능밖에는 없습니다만 자격리자에 대해서도 응시를 허용하는 시험이 있고 아닌 시험이 있어서 그것은 방역당국도 어떤 지침을 내리겠지만 그 시험을 시행하는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연숙 위원** 그런데 그 감염병을 주관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수능은 되고 면허시험은 안 되고 다른 국가시험 안 되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일관된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꼭 같이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김원이 위원님.

○**김원이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방역대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간 나라가 있나요,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감염병이 세계 대유행, 팬데믹 상황에 오면서 한 가지 대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오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원이 위원**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집단면역 한다고 실험을 하다가 확 퍼지면서, 국민들에게 완전히 퍼지면서 봉쇄에 들어갔다가 다시 늦췄다가 요즘 다시 조이고 있지요? 프랑스나 영국·독일의 경우는 어떤가요, EU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은 아주 거기도 2차 아닌 3차 전파를 와 가지고 아주 사회적 격리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원이 위원** 처음에, 올 2월, 3월 정도에 봉쇄 조치를 아주 강하게 했다가 여름에 조금 풀었다가 최근에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금 봉쇄로 돌아섰지요? 영국·프랑스·독일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원이 위원** 즉 예상처럼…… 이 방역과 민생을 잡기 위해서 감염병이 확대되면 좀 통제를 강화했다가 감염병이 느슨해지면 다시 좀 풀어 주고 하는 정책들, 즉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원이 위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방역과 민생을 잡기 위해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리한 거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어 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3/4분기에서 전 분기 대비 GDP 1.9% 플러스로, 상승한 것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원이 위원** 그래서 야당도 1차 재난지원금이 나 2차 재난지원금 할 때는 반대를 했었지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내년 예산에 세워 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한 가지 정책으로 끝까지 이어 가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민생과 방역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정부가 계속 그렇게 방역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구요.

최근에 사실 걱정은 걱정입니다. 야당의 걱정도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사실 300명대 유지하다가 오늘 580명인가 나오고 다음 주 정도 되면 1000명에 육박할 거라고 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시기적으로 수능하고 겹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정도, 가장 빨리 시행해서 수능 며칠 후까지라도, 한 열흘 정도라도 2.5단계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건 뭐 저희가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2.5단계가 되면 거의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원이 위원 수능이라고 하는 시기가 전 국민의, 수능생만 4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족까지 따지면 100만 명이 넘고요. 그 주변의 지인이거나 학교 관계자들 이렇게 따지면 수백만 명에 이르거든요, 수능 관련자들이. 그런 분들이 한 군데서 시험을 치고 또 축하하고 뒤풀이하고 하는 이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수능을 전후해서는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낮추냐 높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능에 특화돼 있는 특별방역은 실시할 겁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민석 김성주 위원님 마지막 말씀이시겠습니까.

○김성주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법안소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살펴보고 이걸 본회의에 올리는 회의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강기윤 간사님…… 또 자리를 비우셨네요. 현안질의라고 해서 시작하셨는데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와 관계없는 말씀을 얘기하세요. 이걸 여야 간사 간에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일정입니다. 지난번에 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예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을 진행하는 걸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현안질의가 필요하면 다시 장관 불러서 얘기하면 됩니다. 법

안 심사는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현안질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정치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강병원 위원님께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된 지 100일 만에 겨우 이틀 법안심사소위 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법안 1소위에서 81건의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8건 의결했습니다. 48건 계속심사로 남겼습니다. 이것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2소위, 114건 심의해서 25건 의결하고 29건 계속심사합니다. 왜 1소위, 2소위가 차이가 납니까? 꼼꼼히 심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속도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생활에 직결된 겁니다. 빨리 빨리 해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법안소위가 원래 예정한 법안도 심사하지 않고, 반절도 심사하지 않고 날짜도 정하지 않고 넘겨 버립니다. 나는 정말 이런 잘못된 관행, 21대 국회에서는 고칠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반복됩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 계실 때. 12월 2일 날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 심사하는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법안들을 국민들한테 선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석 양 간사 간의 원활한 협의 그리고 각 법안소위의 통상적 진행 그리고 양 간사 간의 협회가 전제되었을 현안질의 등등을 상식적으로 예상하고 예정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에서 그런 통상적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행이 좀 있었습니다.

저로서도 ‘이렇게 그냥 계속 진행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중간에 있었으나 그러나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마는 동시에 위원회에는 항상 위원회 자체의 진행에 있어서 균형 감각과 예측 가능성들이 항상 또 전제되어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위원회 운영의 준칙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소위는 의당 필요한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상식적으로 전제된 수준을 넘는, 간사 간 협의를 넘는 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의 관례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장님, 잠깐 마치시기 전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아, 그러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까 이종성 위원님께서 아주 우리 생활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드시면서 자기 몸에 박힌 가시를 뽑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냐, 의료행위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자가진단키트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은 의료행위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자기 스스로 했을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자가진단키트를 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변의 가족이나 비의료인들이 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걸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기윤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미애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백종헌	서영석	서정숙
신현영	이용호	이종성	인재근
전봉민	정춘숙	주호영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청가 위원(1인)

남인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전문위원	신향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

기획조정실장	박민수
사회복지정책실장	박인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
차장	양진영
기획조정관	김진석
질병관리청	
차장	나성웅
기획조정관	배경택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민형배·이정문·송갑석·양정숙·양경숙·김성주·신영대·이원택·박광운·도종환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백종헌·허은아·황보승희·조명희·정운천·최연숙·유경준·강대식·하태경·서정숙·정동만·추경호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서정숙·강기윤·구자근·송언석·백종헌·이철규·한무경·이종성·권성동·김예지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7일 회부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정숙·강기윤·구자근·송언석·백종헌·이철규·한무경·이종성·권성동·김예지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예지·강기윤·정진석·조태용·박덕흠·윤두현·서범수·최승재·양금희·김선교·황보승희·이영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희·양정숙·이수진(비)·오영환·권칠승·최혜영·강민정·윤미향·이탄희·김진애·강준현·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희·양정숙·이수진(비)·오영환·권칠승·최혜영·강민정·윤미향·맹성규·김진애·강준현·인재근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전해철·양정숙·김홍걸·황희·  
맹성규·김민철·김종민·신영대·최인호·  
문진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희·양정숙·이수진(비)·오영환·  
권칠승·최혜영·강민정·윤미향·맹성규·  
김진애·강준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고영인·서동용·이용빈·최혜영·  
유정주·이동주·장철민·김경만·김희재·  
맹성규·김승원·전혜숙·윤재갑·강득구·  
박성준·홍성국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고영인·서동용·김영호·이용빈·  
최혜영·유정주·이동주·장철민·김경만·  
김희재·맹성규·김승원·안규백·윤재갑·  
강득구·박성준·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18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18. 정부 제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탄희·박광온·최혜영·이원욱·  
양이원영·이수진(비)·민형배·이규민·박주민·  
박용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후덕·고용진·권인숙·김정호·  
박정·서삼석·송갑석·양향자·오영환·  
우원식·이규민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정재·전주혜·송언석·권명호·  
이영·정진석·추경호·최연숙·한무경·  
최승재·김기현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9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최강욱·박성준·양정숙·김희재·  
강민정·윤재갑·김주영·오영환·문진석·  
김종민·이성만·류호정·민형배·이규민·  
서영석·김승원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19. 인재근·김홍걸·서영석·양정숙·  
양정숙·이규민·이용빈·최연숙·최혜영·  
홍성국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정춘숙·김정호·김윤덕·김영진·  
윤후덕·장경태·강득구·윤미향·이정문·  
어기구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0일 회부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이종성·성일중·박덕흠·이종배·  
임이자·김형동·강기윤·김성원·정희용·  
권명호·권성동·정동만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정청래·김승원·송갑석·권인숙·  
오영환·이병훈·양정숙·이상현·이수진·  
남인순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20. 김정재·김예지·김희국·추경호·  
송언석·권명호·정진석·최연숙·한무경·  
김기현·양금희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이종성·임이자·김형동·강기윤·  
김성원·정희용·권명호·권성동·정동만·  
정운천·윤창현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20. 이종성·임이자·김형동·김성원·  
정희용·권명호·권성동·이태규·김태호·  
정운천·윤창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3일 회부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김기현·권명호·서병수·최연숙·  
하태경·김석기·윤주경·김영식·윤두현·  
이종배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서정숙·권성동·한무경·김예지·  
송언석·백종현·구자근·전봉민·조태용·  
최연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최연숙·윤재갑·남인순·권은희·

인재근 · 박대수 · 강대식 · 김상훈 · 양정숙 ·  
김정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민형배 · 이정문 · 송갑석 · 양정숙 ·  
양경숙 · 이소영 · 이원택 · 박광운 · 이동주 ·  
서영석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4. 박성준 · 전해숙 · 오영환 · 김승원 ·  
임오경 · 김경만 · 소병훈 · 이용선 · 김종민 ·  
김홍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5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13. 정부 제출)

1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이종성 · 성일중 · 박덕흠 · 이종배 ·  
임이자 · 김형동 · 강기윤 · 김성원 · 정희용 ·  
권명호 · 권성동 · 정동만 의원 발의)

1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김종민 · 강훈식 · 김남국 · 김용민 ·  
박주민 · 장경태 · 전용기 · 최강욱 · 홍성국 ·  
황운하 의원 발의)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박성준 · 김승원 · 박정 · 박완주 ·  
윤재갑 · 김영호 · 이용선 · 김경만 · 오영환 ·  
이정문 · 남인순 · 이성만 · 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  
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